

[참고]

주요 개정내용

개정 항목	현행(요지)	개정(요지)	비 고
① 소형 돌출간판 설치 규제완화	높이 5미터미만으로 간판 1면 면적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	높이 5미터 미만이거나, 1면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	하단이 지면으로부터 3m이상, 바깥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.2m이내 표시
② 가로형 간판 설치규제 완화	건물4층이상측후면에는 판류형 설치만 허용	같은 장소에 입체형도 허용	도시미관상 오히려 우수
③ 옥상간판 설치방법	가로30m이내,세로20m이내, 높이15m이내,건물높이1/2이내 (사각형 형태로 규정)	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 최대길이 30m이내 총 면적 1,050㎡이내,높이15m이내, (원형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)	옥상간판 정의, 실제에 부합
④ 광고물 색상 규제 완화	애드벌룬은 총 면적 중 흑색·적색류를 1/2이내 사용	애드벌룬 색상 규제 폐지	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
⑤ 입체형 옥상 간판은 안전도 검사대상 제외	옥상간판 중 높이 4미터 미만 불링핀 모형, 도료는 제외	입체형도 제외 대상에 추가	안전에 문제가 없음
⑥ 건물벽면 현수막 설치 규제 완화	내용 변경시 마다 신고	최초 부착시만 신고, 허가된 벽면 게시시설에 설치시 신고불요	